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10. 19.(금요일),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김영운, 정해임, 정형호, 한경자,

한상일, 허순선, 심승구, 양종승, 유영대, 정종수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검토사항】		
1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	비공개
2	'궁중다례의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검 토 사 항

1.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12-002

2. '궁중다례의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궁중다례의식'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7.12.19) 검토를 거쳐, 2018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종목 현황
 - 종목명칭 : 궁중다례의식(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 '01.12. 지정)
 - ㅇ 주요 전승자 : 김의정('41년 / 여 / '01.12. 서울시 보유자 인정 /명원문화재단 대표)
- (2) 추진경과
 - ㅇ 2018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자 검토 및 추천('18.2.23)
 -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관련 자료 제출('18.7.20.)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18.7.20~8.18)
- 3) 지정가치 조사
 - ㅇ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4인
 - ㅇ 조사기간 : 2018.7.20.~8.18.
 - ㅇ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

라. 검토의견

- 궁중다례의식은 200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 었음
-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조사위원 대부분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지정가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 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ㅇ 부결함
 - 시도무형문화재로 존치하여 보존 전승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끝.